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4779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A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8. 9. 5.

판결 선고 2018. 10. 17.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5가단5285924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2,83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2018. 9.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청구취지에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42,830,4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 부분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1) 기술보증기금은 2013. 10. 24. 원고와 사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보증원금 63,75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4.로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기한은 2015. 10. 23.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기술보증기금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경우, 폐업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등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에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비용, ④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3) 원고가 2015. 3. 12.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개회5720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원고의 위 개인회생신청은 2015. 7. 14. 기각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2015. 6. 11. 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64,695,8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8,419원을 회수하여 아직까지 기술보증기금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4,687,398원이고, 회수된 금액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원고는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604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기술보증기금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1) 기술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고,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8337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8. 25.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 중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수계하고 이를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나아가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그대로 준용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검토

기술보증기금과 원고가 2014. 10.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된 상태에서, 원고가 2015. 3. 11.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2015. 3. 12. 원고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4. 2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이 2015. 6. 11. 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이고, 이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피고와 원고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 56644 판결).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또는 동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선의를 추단케 할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갑 9-1, 9-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5.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제3항 기재 건물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3. 11.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채권자에게 원래의 재산보다 다액이 회복되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갑 9호증,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24. 기업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공주지원 접수 제2002호로 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위 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3. 11. 말소되었고, 2015. 3. 11.을 기준으로 위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원고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43,867,4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의 경우 그 목적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등), 그 목적물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3,867,42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2016. 6. 9.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86,697,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2,830,476원(=86,697,900원 - 43,867,424원)이 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42,830,4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의 소 부분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정지선, 판사 한재상

목록

1. 공주시 D 대 783㎡
2. 공주시 E 대 419㎡
3.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 조적조 스톤지붕 1층 단독주택 53.46㎡. 끝.